#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의안 번호 | 1364 |
|---|---|

제출년월일 : 2005. 8.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안이유

○ 경영수익사업은 1995년 이후 적절한 투자사업을 선정하지 못하고 매년 이자 수입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 이에 대한 필요성 논란이 지속되었고,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대부분은 현재 일반회계에서 추진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체제에서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존재가 유명무실하여 이를 폐지하고자함.

## ☐ 주요골자

가. 동조례 폐지

## ☐ 폐지 조례안 : 별첨

##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지방재정법 제5조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1991.04.13 조례제0405호]
개정 1992.05.13 조례제0449호
개정 1992.12.30 조례제0478호
개정 1998.10.12 조례제0794호(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9.10.09 조례제0872호(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2.10.08 조례제1033호(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따른 투자재원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영수익사업)**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함은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발굴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으로서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지대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말한다.<개정 '98.10.12>

**제3조 (투자기금의 조성)** ①이 조례에서 안산시 경영수익 사업 투자기금(이하 "투자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립된 기금을 말한다.

②제1항은 투자기금의 조성은 1991년부터 적립하며 그 투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2.05.13>

1. 지방자치단체 1회계년도 이자수입금에 상응하는 일반회계에서의 전출금
2. 투자기금의 운용수입금
3. 금융기관(단자회사 포함)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및 배당금
4. 개발부담금
5. 도비보조금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투자기금은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운용관리하되 계리의 정확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 2항에 의한 기금조성을 위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②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투자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금융기관에 예치
3.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 (경영진단 기획단의 구성)** 투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진단 계획단(이하 "경영진단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계 및 사업관리방식에 관한 사항
3. 투자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6조 (대상사업)** 투자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래, 자갈, 석재, 천연수, 약수, 온천수, 천혜자원의 개발수익을 재고할 수 있는 사업
2.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용주차장 등 설치 운용할 수 있는 사업
3. 관광위락지 시설 확충운영, 임수산 소득증대 가능
4. 지역토산품 개발, 장려 또는 생산공장 운용가능 사업
5. 지방 공영개발사업 영역확대 및 개발이익의 재활용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대상사업 선정)** ①대상사업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자치단체 경영수익사업발굴단의 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②자치단체 의무적 추진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대상사업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투자기금의 운용계획)** ①투자기금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경영진단 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금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기금의 운용규정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투자기금 사용계획
3. 경영수익사업 발굴단에서 협의 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투자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협의 선정한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회계공무원)** ①투자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특별회계운용관을 둔다.<개정 1992.12.30, 1998.10.12>

1. 기금특별회계 운용관 : 업무담당국장<개정 2002.10.08>
2. 분임운용관 : 업무담당과장<개정 2002.10.08>
3. 분임지출원 : 투자분석팀장<개정 '99.10. 9, 2002.10.08>

②기금운용관은 투자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투자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관리)** 투자기금을 위한 회계관리는 제9조의 회계공무원이 예산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 (결산 및 보고)** ①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지침에 의거 전년도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경영진단 기획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기금특별회계 예산서와 전항의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1999.10.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17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3·16>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